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표시 의무 구체화 및 제재 근거 신설〉

- 윤종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68호)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04호)
-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034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의안번호 221806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종균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4. 3.
3. 회부연월일 : 2026. 4.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에 관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표시하여야 하는 충전요금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가 충전요금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가격제도와 달리 충전요금의 보고, 공개, 표준화된 표시체계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낮고, 합리적인 요금관리 장치가 부족함.

이에 충전요금의 보고·공개·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5 및 제108조).

[의안번호 221810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복기왕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4. 3.
3. 회부연월일 : 2026. 4.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이 증가하면서 충전요금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충전사업자별로 상이하게 책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충전 전에 이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동일한 공동주택 내에서도 요금 차이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충전요금 정보가 충전사업자 중심으로 관리·운영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이를 충분히 확인하거나 안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현행 법령은 충전요금 표시에 관해서는 규정하면서 표시 방법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이용자가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충전시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표시 항목

및 방법을 구체화하며,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충전서비스 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96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의안번호 221903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태호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6. 5. 20.
3. 회부연월일 : 2026. 5.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별로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다르게 책정되고 이용자가 충전요금을 파악하기 어려워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에 관하여 표시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가 충전요금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기자동차사업자로 하여금 저속충전 및 고속충전 별 1kWh당 충전요금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5제1항 및 제108조제1항).

Ⅲ. 검토의견

세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의 표시 제도를 정비하여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세부적인 규제 수단(표시 방법, 제재 방식 등)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그 입법 목적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일괄하여 검토함.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윤종균의원안	복기왕의원안	김태호의원안
제96조의5(충전 요금의 표시) ①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요금 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96조의5(충전 요금의 표시 및 보고·공개 등) ① ----- ----- ----정상요금, 할인요금, 할 인율, 할인금 액 등 충전 시 적용받는 충전 요금에 관한 정보를----- -----.	제96조의5(충전 요금의 표시) ① · ② (현 행과 같음)	제96조의5(충전 요금 등의 표 시) ①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전요 금 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 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 령으로----- -----표 시하여야-----. 1. 저속충전 및 고속충전 별 1kWh당 충

현행	윤종균의원안	복기왕의원안	김태호의원안
<신설>			<u>전요금</u> 2. <u>전기차충전기 설치업체명, 관리자이름 및 비상연락처</u>
<신설>			3. <u>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
<신설>	<u>②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충전요금에 관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③ ----- ----- ----- -----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윤종균의원안	복기왕의원안	김태호의원안
충전요금의 적 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 지 및 영업비 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 해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전기자동차충 전사업자의 충 전요금을 공개 할 수 있다.	----- ----- ----- ----- ----- ----- -----제2 항에 따라 제 출받은 전기자 동차충전사업 자의----- ----- -----.		
<신설>	④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 으로 충전요금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충전요금을 이 용자가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기 후에너지환경 부령으로 정하 는 방법에 따	

현행	윤종균의원안	복기왕의원안	김태호의원안
<신설>		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충전요금을 표시하는 경우 kWh당 요금, 기본요금 또는 시간요금 부과 여부, 그 밖에 추가로 부과되는 요금 등이 사용자가 요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⑤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행	윤종균의원안	복기왕의원안	김태호의원안
<신설>	⑤ <u>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전기자 동차충전사업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 도록 명할 수 있다.</u>	<u>지체 없이 이 를 반영하여 표시하여야 한 다.</u>	
<신설>	⑥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충전요금 정보 표시, 보 고, 공개 및 표시 방법 등 에 관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u>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	제108조(과태료) ① -----	제108조(과태료) ① -----	제108조(과태 료) ① -----

현행	윤종균의원안	복기왕의원안	김태호의원안
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 ----- ----- -----.	----- ----- ----- ----- -----.	-----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신설>	9. 제96조의5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자	9. 제96조의5제3항을 위반 하여 충전요 금을 표시하 지 아니한 자	9. 제96조의5제1항을 위반 하여 충전요 금 등에 관 한 정보를 표시하지 아 니한 전기자 동차충전사 업자
<신설>		10. 제96조의5제4항을 위 반하여 충전 요금에 표시 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 한 자	
<신설>		11. 제96조의5제5항을 위	

현행	윤종균의원안	복기왕의원안	김태호의원안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반하여 변경된 충전요금을 반영하여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세 개정안은 충전요금 정보의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신설한다는 점에서는 궤를 같이하나, 요금의 표시 방법과 제재 방식 등 세부적인 규제 수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개정안별 주요 특징 및 차이점 비교]

구분	윤종균의원안	복기왕의원안	김태호의원안
표시 내용	정상요금, 할인요금, 할인율 등 (안 제96조의5제1항)	kWh당 요금, 기본/시간요금 부과 여부 등 (안 제96조의5제4항 신설)	저속/고속 별 kWh당 요금, 관리자 정보 등 (안 제96조의5제1항)
표시 방법	가격표시판 설치 의무화 (안 제96조의5제4항 신설)	충전 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안 제96조의5제3항 신설)	(현행 유지: 대통령령으로 위임)
추가 의무	장관에게 충전요금 보고 및 공개 (안 제96조의5제2항·제3항)	요금 변경 시 지체 없이 반영 (안 제96조의5제5항 신설)	(없음)
제재 방식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안 제108조제1항제9호 신설)	위반 시 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안 제108조제1항제9호~제11호 신설)	위반 시 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안 제108조제1항제9호 신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공공 및 민간 충전시설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충전요금 표시 방법과 구체적인 항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충전사업자별, 기기 용량별로 상이한 요금 구조가 운영됨에도 소비자가 사전에 이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시장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지는 실정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요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요 충전사업자들의 요금 체계는 아래와 같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음.

[충전사업자 및 용량별 충전요금 현황]

사업자명	기기 용량 구간	요금 (원/kWh)
기후에너지환경부 ¹⁾	1~99kW	324.4원
	100~350kW	347.2원
GS차지비	1~50kW	324.4원
	51~350kW	347.2원
채비	1~50kW	324.4원
	51~999kW	347.2원
	1~400kW	485원

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공공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직접 운영하는 주체이며, 동 부처가 책정한 공공 충전요금은 국내 민간 충전사업자들이 자사의 요금을 산정할 때 기준표 역할을 수행함.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위 표와 같이 동일 사업자 내에서도 충전기 용량에 따라 요금이 다르고 사업자 간에도 격차가 존재하여, 일관된 표시 체계가 없을 경우 이용자의 혼란이 지속될 수 있음.

현행 「전기사업법」 제4조¹⁾는 전기사업자등이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충전요금의 구체적 표시 항목을 명시하고 제재 근거를 신설하여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도모하려는 세 개정안의 입법적 취지는 동 조항의 목적에 부합하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타 법령과의 중복 규율 여부, 표시 방식 의무화에 따른 사업자 부담 및 규제의 실효성, 제재 수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타 법령(「대기환경보전법」)과의 중복 입법 여부 및 규율 체계의 정합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충전요금 정보표시 강화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이미 타 법령에 반영되어 있다는 사유로 '기반영' 의견을 제시하였음.

실제로 2025년 11월 11일 개정되어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대기환경보전법」은 충전시설 운영자에게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의 전산망 실시간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조치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²⁾, 해당 법률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1) 「전기사업법」 제4조(전기사용자의 보호)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0(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 ①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는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 설치정보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충전시설의

개정안이 입법예고(2026.4.30.~6.9.) 절차를 거치는 등 세부 하위법령 마련이 활발히 진행 중임.

특히 김태호의원안에서 법률로 상향하려는 '저속/고속 요금 분리 및 연락망 표시' 역시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의 세부 공개정보 범위에 이미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음³⁾.

또한, 현행 「전기사업법」 제105조제7호는 충전요금 미표시 등에 대해 이미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⁴⁾, 세 개정안이 신설하는 과태료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 제재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전기사업법」에 동일한 의무와 제재를 중복 신설하기보다는 「전기사업법」에는 요금 공개의 선언적 원칙만 규정하고 구체적 규제

이용 상태, 충전요금, 고장 여부 등 이용정보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시행일: 2026. 11. 12.]

제58조의11(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충전시설이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시행일: 2026. 11. 12.]

제94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의2.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시설 설치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충전시설 이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시행일: 2026. 11. 12.]

3)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 공개정보(일반대상) 범위에 따르면, '가. 충전시설 설치자의 성명 또는 명칭, 연락처', '다. 충전시설 안전사고 관련 비상 연락망에 관한 정보', '마. 충전 요금, 결제 방식 및 요금 표시 방법'이 명시되어 있음. 아울러 완속(저속)과 급속(고속) 충전기는 기기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완속과 급속 충전 요금 역시 명확히 구분되어 제시됨.

4) 「전기사업법」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9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요금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및 제재 수단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는 등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요금 표시 방식 의무화에 따른 실효성 및 하위법령과의 정합성, 적용 대상의 사각지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윤종균의원안은 물리적인 '가격표시판' 설치를 일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4제1항이 이미 충전요금 표시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게시 등 복수의 방식을 허용하고 있어⁵⁾, 법률로 물리적 표시판만을 강제할 경우 규제 강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특히, 물리적 가격표시판을 일괄 의무화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신 자료에 따르면 기기당 약 40만원 수준의 제작·설치 비용이 소요 되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영세 민간사업자가 다수인 충전사업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윤종균의원안 부칙에 명시된 '3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전국 충전소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 가중은 물론 현실적인 한계가 따를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5)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4(충전요금의 표시) 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법 제96조의5 제1항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충전요금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반면, 복기왕의원안은 '충전 시작 전 직접 확인'을 규정하고 있고, 김태호의원안은 표시 방법을 현행처럼 하위법령(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구 표시판 설치, 안내문 부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 등 복수의 방식을 허용하고 있음⁶⁾.

모바일 앱 방식은 복합 요금구조(시간대별 요금 등)의 실시간 변동을 즉시 반영하기 용이하며, 실제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월간 접속 건수는 2026년 상반기 기준 매월 35만건을 상회하는 등 온라인 정보 활용도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음.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월간 접속 건수 추이]

구분	2025년 12월	2026년 1월	2026년 2월	2026년 3월	2026년 4월	2026년 5월	2026년 6월
접속 건수	183,020건	215,107건	359,568건	384,019건	370,106건	391,907건	382,321건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다만, 앱 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현장 정보 접근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관련 협회 등과 협의하여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을 별도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표 21의4]

1. 공통기준

다.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시설 입구에 표시판을 설치하거나 충전기에 안내문을 부착 혹은 표시하는 방법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방법으로 충전시설의 가동 및 고장 여부, 충전 요금을 저공해자동차등 사용자가 현장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고속도로 휴게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충전시설의 경우에는 충전시설 입구에 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세 개정안 모두 법 적용 대상을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충전시설은 요금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존재함.

따라서 고속도로 휴게소 등 운전 중 확인이 어려운 장소에는 물리적 표시판을 의무화하되 일반 충전시설은 앱과 안내문 등 다양한 방식을 유연하게 허용하고, 공동주택 충전기 등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세밀한 대안 마련에 대하여 논의해 볼 수 있음.

셋째, 의무 위반 시 제재 방식의 타 법령 간 형평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윤종균의원안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복기왕의원안과 김태호의원안은 '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는 제3항제10의2호(관리기준 위반)를 통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4항제4의2호(이용정보 미제공)를 통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있어⁷⁾, 사실상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두 법률 간 제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함.

7)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의2.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의2.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시설 설치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충전시설 이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향후 심사 과정에서 제재 수단의 비례 원칙 및 타 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제재 수준과 처분 방식을 모색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종합하면,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정보의 투명성 제고라는 세 개정안의 입법 목적은 타당함.

다만, 심사 시에는 타 법령과의 중복 규제 및 영세사업자의 현실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① 「전기사업법」에는 충전요금 공개의 기본 원칙만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세부 표시 항목 및 제재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안, ② 세 개정안의 취지를 취합하되 가격표시판 의무화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특정 장소에 한정하고 일반 충전시설은 복수의 방식을 허용하여 규제를 차등화하는 수정안 마련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37